

의안번호	2212218
의 퇴 인	김상훈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5.
추 계 번호	25F44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제2호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부분에 소형모듈원자로, 양자컴퓨터 및 클라우드컴퓨팅 등 추가 －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반도체 등 8개 분야에서 소형모듈원자로, 양자컴퓨터 및 클라우드컴퓨팅 등을 포함한 11개 분야로 확대	
2	안 제100조의35 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신설 － 공제대상: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※ 국가전략기술사업: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 －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요건: ①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조한 재화 ②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재화 － 공제율: 기업규모에 따라 생산비용의 15~25% ※ 중소기업: 25%, 중견기업: 20%, 대기업 15% －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25% － 적용기한: 2035.12.31.	
3	안 제144조의2 (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등에 대한 환급 특례)	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법인세·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－ 적용기한: 2029.12.31.	
4	안 제144조의3 (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등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	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	
5	안 제144조의4 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)	○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이 과세연도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법인세·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－ 적용기한: 2035.12.31.	
6	안 제144조의5 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	○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 환급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1항제2호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0조의35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44조의2(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144조의3(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5	안 제144조의4(국가전략기술 국내 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6	안 제144조의5(국가전략기술 국내 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소형모듈원자로(Small Modular Reactor, 이하 ‘SMR’), 양자컴퓨터 및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하고, 국가 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,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및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(안 제100조의35, 제144조의2, 제144조의3, 제144조의4, 제144조의5 신설 등)

- 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8개 분야에서 SMR, 양자컴퓨터 및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한 11개 분야로 확대
 - 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등 8개 분야를 포함
 - ※ (현행)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
 - (개정안) 상기 분야에 SMR, 양자컴퓨터,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추가
 - 분야내 구체적인 기술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[별표 7의2]에 규정
- 안 제100조의35는 현행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(이하 ‘국가전략기술사업’)에서 반도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일정 요건에 맞게 생산한 경우,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 - 공제대상: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 - 국가전략기술 활용 재화의 요건
 - ①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의해 제조
 - ② 해당 재화의 최종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완료
 - 공제내용: 기업규모에 따라 제품 생산비용의 15~25%
 - ※ 중소기업 25%, 중견기업 20%, 대기업 15%
 -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25%
 - 적용기한: 2035.12.31.
 - ※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미공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, 20년간 이월공제 허용
- 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금액이 발생한 경우,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
 - 현행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·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, 미공제금액이 발생하며 20년간 이월공제 허용
 - 개정안은 2029년까지 미공제금액에 대해 환급 또는 환급액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
 - ※ 단, 환급대상인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- 안 제144조의4 및 제144조의5는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금액이 발생한 경우,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

도록 특례를 신설

- 개정안은 2035년까지 미공제금액에 대해 환급 또는 환급액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

※ 단, 환급대상인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
□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 기술에 추가되는 SMR, 양자컴퓨터 및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분야의 R&D 및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등의 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SMR, 양자컴퓨터 및 클라우드컴퓨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
- 참고로, 동법 시행령 [별표 7]에 따라 SMR 및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은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의 에너지·환경 분야(세부분야: 원자력) 및 지능정보 분야(세부분야: 양자컴퓨터, 클라우드)에 각각 포함되어 구체적인 기술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[표 1] 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상 신성장·원천기술의 SMR 등 기술범위

기술분야		기술
SMR	에너지 환경 (원자력)	(SMR 설계 및 검증 기술) SMR 노심 설계 및 해석 검증기술, 계통 핵심기기 설계기술 등 (SMR 제조 기술) 탄력운전 대응 열적성능강화 핵연료 집합체 개발 및 제조기술 등
양자 컴퓨터	지능정보 (양자 컴퓨터)	(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)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(큐비트)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의 제작기술, 양자컴퓨터의 구동 원격사용 등 활용을 위한 기술 등
클라우드 컴퓨팅	지능정보 (클라우드)	(Software as a Service)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실행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, 다양한 사용자 요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기술 등 (Platform as a Service) 개발자가 DB, 웹, 모바일, 데이터 처리 등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상에서 손쉽게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의 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등 (Infrastructure as a Service) 가상머신 혹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자원을 가상화하고, 다중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자원을 확장하는 기술 등

주: 기술분야의 ()안은 분야내 세부기술을 의미

- 또한, SMR, 양자컴퓨터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에 대한 기업규모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 등의 현황, 공제규모 등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과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－ 국세청에 따르면 R&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까지는 구분이 가능하나, 기술 분야별로 공제실적은 구분되지 않음
- ※ 참고로, 2024년 법인세 신고기준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: 2024년 법인세 신고기준
(단위: 억원)

구분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R&D 세액공제	19,713	6,164	2,682
통합투자세액공제	14,699	223	599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

- 안 제100조의35, 제144조의4 및 제144조의5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에 대한 법인세액 및 생산비용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하나, 제품의 품목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중 공제가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, 생산비용의 산정방식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을 특정할 수 없음
 - －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는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청정수소 관련 제품, 미래형 이동·운송수단, 바이오의약품 등이 있으나, 세부적으로 특정 제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 - 또한,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의 생산여부, 최종공정 완료 등 요건을 만족하는 비중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향후 세액공제를 추정할 수 없음
 -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에 따라 향후 동 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 발생에

다른 환급 및 제3자 양도의 규모 등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기업의 미공제금액 발생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하나, 미공제금액 계산방식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-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,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기업별 납부세액의 발생 여부, 최저한세 미달 여부 및 이로 인한 미공제금액 규모에 대한 자료는 현재 집계되지 않음
 - 또한,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신설로 인하여 환급 및 제3자 양도가 허용되는 미공제금액의 계산방식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,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미공제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특정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